

'23년 보조금 지급사업(고위험개선)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

※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**최우선선정** (붙임4 참조)

① '22년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, ②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

③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장별 예측 위험도 - 산재발생 위험률 0.95점 이상인 기업

1 개별점수 산정

선 정 항 목	항목별 가중치	비고
■ 공통적용 항목	70점	
①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	10점	
② 사고사망 재해다발 위험업종	25점	사고사망만인을 기준 소업종 단위배점 (붙임4 참조)
③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	5점	
④ 취약계층* 근로자 고용 사업장(근로자 1명당 2점) * 장년근로자(만55세이상), 장애인, 외국인, 청년(만15~29세)	10점	
⑤ 고용위기 지역('23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)	5점	(붙임4 참조)
⑥ 「산단대개조」 정책에 따라 선정된 산업단지 입주기업	5점	(붙임4 참조)
⑦ 다품목 신청 사업장 * 품목 1개 당 2점(최대 10점)	10점	품목코드별 점수 부여
■ 자율활동 우수항목	30점	
⑧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 * ①노사문화 우수기업, ②강소기업, ③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, ④NCS 기업활동 우수사례 선정기업, ⑤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⑥일자리 으뜸기업 ⑦일터혁신 우수 기업(인증) ⑧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⑨산학협력 우수기업(인증) ⑩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	10점	각 5점씩 -> 2점씩 단, 우수항목 중복시 최대 10점 으로 한정 (붙임4 참조) *대상 명단이 없는 경우 인증(정)서 제출 시에만 점수 부여
⑨ 상생(공생)협력 참여한 협력업체	10점	'22~'23년 참여업체 (붙임4 참조)
⑩ KOSHA-MS 인증, 위험성평가 인정 기업	10점	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
■ 가점항목 (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 항목)	가점(+30점)	• 일선기관별 필요 시 수립
계		

* ④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 내 인원(사업주 포함)에 대해 점수 부여.
단, 장애인은 별도 증서서류(근로계약서, 장애인증명서 등)를 추가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

* ⑧은 인증(정)서 및 대상명단(①~②, ④~⑦, ⑨. 붙임1 참조)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, 인증(가점적용)
기간 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